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7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 오기형 · 복기왕 · 김남근

임미애 • 박수현 • 문금주

이광희 • 염태영 • 김영환

박홍배 • 김영배 • 정성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임.

이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30년의 경과로 완성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249條(公訴時效의 期間)</u> ① ・	<u>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u>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443조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30년의 경과로 완
	<u>성된다.</u>